

제403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3년2월14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0)
2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4)
2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2)
2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91)
236.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5)

상정된 안건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2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2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2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14) 12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2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8) 12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9) 12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1) 12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73) 1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5) 12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0) 12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2) 1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52) 1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20) 12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4)	12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4)	12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8)	12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44)	1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1)	1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6)	1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9)	12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1)	12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82)	12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5)	12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78)	12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789)	12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45)	12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7)	12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5)	12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4)	1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3)	1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20)	12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6)	12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9)	12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0)	12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33)	12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92)	12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108)	12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4)	12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947)	12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217)	12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13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13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13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13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13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13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13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13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13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13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13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13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13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13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13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13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13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13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13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13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13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13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13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1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13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13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13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13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13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13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3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13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1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13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3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13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	13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13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13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13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1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13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3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13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3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14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14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1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4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1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1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1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4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4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4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4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4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4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4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4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4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4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4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5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5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5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15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1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15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1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15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1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1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1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15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1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15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15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15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15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1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1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1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16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1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1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1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1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1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1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1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1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16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1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1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1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1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1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1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16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1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1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16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1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16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1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16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1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16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16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16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	17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	17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	2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	27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	27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	27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	27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	2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	28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4)	28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0)	28

(14시50분 개의)

○소위원장 류성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작년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서 입법취지가 달성된 법안들을 폐기 의결하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61)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59)
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720)
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910)
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514)
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900)
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288)
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59)
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171)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173)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05)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80)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5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5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20)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154)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14)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388)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44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 발의)(의안번호 211650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596)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679)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711)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82)
 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095)
 2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878)
 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789)
 2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145)
 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607)
 3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285)
 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354)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963)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20)
 3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406)
 3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859)
 3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990)
 3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6833)
 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692)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108)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604)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947)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217)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9)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16)
4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4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2)
4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9)
4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6)
50.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8)
5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1)
5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99)
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9)
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3)
5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9)
5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46)
5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5)
5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11)
5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690)
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7)
6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9)
6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4)
6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9)
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6)
6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18)
6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8)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1)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810)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134)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0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48)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096)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8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67)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10)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49)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58)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74)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34)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7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34)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00)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5)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5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56)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118)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50)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3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1)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78)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92)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76)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23)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1)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2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862)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9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7)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1)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7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09)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36)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5)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27)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0)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42)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5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63)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83)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56)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6)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8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47)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58)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1)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4)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9)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84)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92)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8)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47)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9)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47)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2)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53)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2)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64)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6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8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33)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2)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8)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5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61)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2)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91)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1)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3)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23)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34)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58)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66)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73)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12)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4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7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44)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6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898)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4)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96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38)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0)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4)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9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8)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19)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42)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74)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89)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7)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8)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55)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8)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94)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0)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07)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2)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49)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2)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83)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0)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4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5)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39)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5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44)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77)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0)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88)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0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8)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20)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51)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77)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66)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7)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0)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69)

○소위원장 류성걸 의사일정 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1항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21건의 안전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호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배부해 드린 수정안반영폐기 안전 관련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대해서 내용이 반영된 세법 법률안들을 상임위 의결로 폐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례로서는 총 2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국가재정법 2건이 본회의에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기재위에서 수정안반영폐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년 세법개정안 당시에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18년 2월에 수정안반영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수정안반영폐기를 의결하신다면 의안정보시스템과 e의안시스템에서 기술적으로 수정안반영폐기라는 항목으로 표시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률안이 개정안에 반영되어 의결된 것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하실 내용은 법안 10개, 총 221건에 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길 이 221건의 법률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법안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 관련해서는 직상정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세소위원회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국회법에 정확한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는 근거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21항까지 이상 221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수정안에 이미 그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02)

2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70)

(14시54분)

○소위원장 류성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2항과 223항, 이상 2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자료 1쪽입니다.

종부세법,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한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류성길 의원님과 고용진 의원님 안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특히 법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합산배제임대주택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또는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인에 대해서는 공제금액 적용을 배제하고 주택 수별로 개인납세자 최고구간의 세율인 2.7%나 5%의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있고 세부담 상한인 150%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 설립목적상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공제하고 주택 수에 따른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등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체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주 6번에 보시면 LH의 경우에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10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합산배제돼서 비과세되기 때문에 약 3500채 정도만 지금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각 법인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세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맨 위가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이고 그다음에 일정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기타 법인들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기본누진세율, 즉 0.5%~2.7%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기본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인들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약 3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세 20%를 포함할 경우에 약 4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세율인상 및 주택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등한 상황에서 투기가 아닌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 조세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포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는 세율인상 전의 과세체계를 기초로 대규모 주택건설이라는 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을 하였고 의무공급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는 동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용이치 않기 때문에 해당 법인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줄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참고로 작년 종부세법 개정 시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서 도시개발사업자 등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건설임대사업자 등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주택사업자인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개정안에 따라서 종부세 납세액이 감면되는 경우에 해당 감면액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공공주택 주거안정 정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8쪽 표에 보시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상 법인들이 되겠습니다. 전체 7개 법인이 되었고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자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공주택이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시 비과세를 하고 있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체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에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비과세 대상 주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주에 보시면 LH의 경우에 철거 예정 지장물주택 합산배제로 인해서 종전 종부세액 174억 원에서 약 41억 원으로 133억 원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중과 누진세율의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인하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에서 60%로 인하된 바가 있고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안녕하십니까? 기재부2차관 참석해 있습니다.

오늘 세제실장도 같이 배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성실히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고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배석하고 있는 세제실장이 답변드리는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동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 등 투기목적과 무관한 법인에 대해서 현재 최고 5%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투기수요 억제에 위한 중과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정안 내용대로 기본세율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이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공공주택개발사업자의 종부세를 인하해 줄 경우에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인하 그리고 그 임대주택의 유지보수에 투자된다는 그런 담보가 가능한가요? LH나 SH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최근에 LH나 SH에서 감면되는 세액을 어떻게 쓰겠다라고 보도자료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담보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김상훈 위원** 왜냐하면 우선 이런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서민계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부세의 인하효과가 그분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LH와 SH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 보도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먼저 저희 의원실에 기재부에서 법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 혜택을 받는 예상 법인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언제쯤 받아 볼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그루핑(grouping)한 자료, 그러니까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법인 이런 그루핑한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얼마나 세혜택을 받는지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SH나 LH는 해당 기업에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도자료에 얼마 정도 감면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제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가운데서 종교법인 그리고 병원, 사립학교 그리고 절세목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재단들의 부동산 등이 대부분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토지개발 이득을 목적으

로 활동하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들한테까지 세율을 절반 깎는 이 종부세 감면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런 부당한 특혜가 되지 않도록 법인 리스트를 요청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신다고 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종교단체나 교육단체나 사회적기업이 이번 조치로 세부담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그것은 사례를 제출해 드릴 수는 있는데 특정한 종교단체나 어떤 교육단체가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감면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법안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지나친 특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불식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볼 때는 이게 특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장혜영 위원** 근거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것만으로는 합리적인 토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작년에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할 때 저희가 알기로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대의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부대의견에 기초해서 의원입법안들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서는 저도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 공익목적이 아니라 개발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내지는 뭔가 절세목적으로 하는 데에 이 좋은 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합리적인 요청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지금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외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공익법인의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으로 한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로 한정해도……

○유동수 위원 공익법인이라는 것이 법인이라는 것만 지금 장혜영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공익법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 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익법인이 당초 설립한 고유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주택에 한정해서 이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주택은 일반법인에 준해서 과세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검토를 좀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이 모든 주택으로 해 버리면 공익법인의 당초 고유목적 이외의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답변을 나중에 드리고.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이 종부세법 관련해서 논의가 꽤 오래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면 새롭게 어디에 혜택을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부동산투기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를 하는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본인의 어떤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되어 있던 말이지요. 그러면 사업자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일부 분량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식인데,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던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기재부에서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개발 시행업자가 얼마나 되는가 검토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체크해서 억울한 종부세를 구제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이게 또 기재위에 계시던 박형수 의원께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중중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공용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까지, 사원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을 하다가 정리됐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과를 하고 또 주택가격이 상승을 꽤 하면 중과된 것에 대한 손실은 너희가 감내하고 고려해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든 정부든 이 법을 개정해 가지고 피해를 봤을 때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익을 봤을 때는 거둬들이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전의 과세세율에 의해서 계획을 했던 시행자에 대해서는 구제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임대주택·다주택에 대해서 중과된 이후에 이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똑같이 시행한 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또 알고 들어온 케이스 아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저는 논의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전에 윤후덕 의원께서도 학교법인 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구제해 줘야 되지 않냐를 놓고 했던 건데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다가 굳이 중과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열어 놓고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양경숙 위원님.

○양경숙 위원 공공주택사업자 및 공익성 있는 법인들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자는 취지는 사실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LH나 SH 같은 경우의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누진세를 적용받았는데 안 받게 되면 상당한 세수가 절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고에 의하면 조금 크게 보면 400억 정

도라고 보고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임차인들의 복리라든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어디에 쓰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혹시 여기 SH나 LH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소위원장 류성걸 LH, SH에서 나오신 분 계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없는 것 같습니다.

○양경숙 위원 나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주택사업자나 공익성 법인의 대표적인 LH나 SH 관계자들도 배석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나 마찬가지로인데,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걸 물어보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가 오라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질의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부르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LH하고 SH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습니다.

LH는 2월 2일 날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감면 금액이 연 136억 원 감면이 되는데 임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료 인하 등 정책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고요.

그리고 1월 27일 날 SH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162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기재부가 이것에 대한 감시·감독을, 이대로 보도자료를 낸 것처럼 임대료 안 내려가면 우리가 다시 올릴 수 있어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인하하겠다 또 임대인들에 대해서 임차인들에 대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실적을 체크해서 국회에 보고해 줘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잘할 그런 자세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실제로 중부세법이 통과하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는…… 중부세가 그때 고지가 될 텐데 내년이나 이것이 국회에 보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계속 팔로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꼭 체크하시고 국정감사 자료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시·감독을 잘 해서 실제로 임차인들한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갔는

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공공주택사업자들에게도 역울하게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과하게 세금을 내는 것을 면해 주자라는 건데 저는 종교법인, 병원법인, 학교법인, 교육단체법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교법인이나 병원법인들이 그렇게 공익만 추구하고…… 공익적인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준 겁니까? 주고 있지 않아요,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23년이나 24년, 적어도 1~2년의 계획은 기재부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이들 법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은 이런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상위 10개 정도만 해도 얼마 정도의 세수를 우리가 삭감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보고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전국에서 공공주택사업자들이 몇 명일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역울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해 주자, 다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그냥 큰 방향만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재부는 항상 적어도 어떤 데이터와 현황을 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앞으로 어느 법인들이 어떻게 공공주택사업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파악하려는 의지도 없잖아요. 해 보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변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혜택들이 적어도 민간 공공주택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그런 것을 어떻게 체크하겠다는 계획은 발표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양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면, 병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교육단체 같은 경우 보통 교직원 사택이나 기숙사는 원래 합산배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음부터 과세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요건이 있습니다. 합산배제될 요건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되는 부분은 중부세가 부과 되는데 저희가 어떤 기숙사나 어떤 교직원 사택이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 안에도 사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통쳐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명확히 공익에 한정되는 경우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기초가 여전히 감세 기초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러면 예기치 못한 감세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난 국회에서 이미 64조나 되는 세수를 깎아준 마당에 이번에 반도체세액공제도 추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계속 감세 기초의 논의들만 기재위를 통해서 성사되고 있다는 우려를, 저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재정지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의견 감사합니다.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해진 위원 존경하는 고용진 위원님 말씀 들어 보면 이 법의 취지가 공정성 또 신의성실의 원칙, 그것 같고 그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장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세제실장님 답변을 보면 이것은 대상 사업자들에

게 특별하게 무슨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손실과 부담을 입은 것을 바로잡아 주는 거라는 취지인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용진 위원님이 설명하신 공정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 실장님이 설명하신 불합리하고 부당한 부담의 보전, 바로잡는 그 측면에서 이 법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보도자료를 냈다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과유불급이 아닌가 싶어요.

감면세액하고 또 대상 사업자를 계산해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임대료 인하한다고 하니까 꼭 혜택을 입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혜택을 입은 것이니까 임대료를 낮춰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유지보수에 쓰겠다, 투자하겠다,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큰 혜택을 입는 것처럼 오히려 오히려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정성, 신의성실의 원칙 또 불합리한 부담에 대한 사후 시정·보전 측면에서 저는 이 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아까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익법인의 경우에 모든 주택을 다 이렇게 범위에 넣을 게 아니라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도록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유목적사업의 주택인지 그게 아닌지 조금 더 사실 판단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예,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8쪽 표를 봐 주시면,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면 유형 미신고가 납세자 수로 따지면 2021년도에 112명이었다가 150으로 늘어나고 종중은 하나도 없다가 135 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5, 이렇게 연도가 지나면서 좀 늘어난다고요. 그렇지요? 이런 대상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건지……

또 이미 증가된다고 봤을 때 알고 있으면서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유형 미신고는 표에 보시면 신고할 때 위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니 까 그냥 유형 미신고로 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종 문제는, 종종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과 안 되려고 새로 ‘나는 종종이다’ 이렇게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누진세율로 적용해달라고 신고하면서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미신고 부분은 앞으로 국세청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위에 있는 구분대로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찬성 분위기인데 다만 한 가지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나요?

세제실장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혜영 위원님께서 이게 감세 기초의 논의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정부 입장에서 작년엔 종부세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제도가 폐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존치가 되다 보니 개인들은 예를 들면 3주택이거나 이런 분들은 팔아서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물론 임대용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불가피하게 소유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중과제도가 존치하다 보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중과세율도 너무 세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큰 혜택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일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종부세를 내는 것은 사실인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종부세가 누진세율 구조가 존치되는 것에 따르는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과도한 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자라는 취지하에서 정부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아까 세제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로는 당연히 그렇게 집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로 과세를 할 때는 다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은 선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당국이 과세하고 맞지 않으면 이의신청하고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고 법안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해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LH나 SH 임대주택 관련해서 지금 보통 임대주택을 한 채 지으면 한 1억씩 적자가 납니다. 정부에서 그 정도로 재정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한 1억씩 적자가 나서 지금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제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고 세제감면이 예를 들어서, 물론 여유가 돼서 임대료 인하나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좋겠으나 이것을 강요할 정도로 지금 LH·SH의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과세당국도 지금 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현황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LH가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부담 완화된 것을 또 임대료 인하로 강요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여러 논의를 거치고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기본 취지를 설명하셨고 지난번에 우리 전체 의결할 때 부대의견에 ‘기재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법인사업자의 불가피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취지에 따라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하지만 이 부대의견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으로 대상을 확 늘려서 입안하는 법안이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유동수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이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검토를 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유동수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과 그렇지 않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 단체에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게 좀 복잡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것을 적용할 때 고유목적사업 주택이 예를 들면 3채, 비고유목적사업 주택은 5채 이라면 5채는 중과세율 적용하고 3채는 또 이런 세율 적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좀 더 생각을 해 보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주택자 중과제도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은 개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제도인데 이런 세율구조를 공익법인에까지 과연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김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훈 위원 이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세율이 인상되고 또 부동산가격의 인상, 무엇보다도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해서 공익사업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발생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공주택개발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기본누진세율을 인하해 주는 게 맞겠다라는 취지에서 발의가 된 것인데 여기에 또 체를 놓고 어떤 공익사업자는 되고 어떤 공익사업자는 안 되고 이렇게 걸러 가지고 하자, 이게 법기술적으로도 그렇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기재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여기서 그것까지 걸러 내는 결과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개정안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그 뒤에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부대의견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도 여기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개

정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예를 들면 공익법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법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을 포함하는, 부대의견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부대의견대로 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수 위원 지금 우리 부대의견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부대의견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이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한 중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할 목적이 아닌 주택을 소유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택의 소유로 볼 수 없고 또 불가피성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분하게 취득해야 할 주택에 한정해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세는 과세 관청에서,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아주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법조문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법조문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법인이, 법인 단체가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주택 또 이외의 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구분은…… 글썄요, 현실적으로 이게 고지제도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특정 공익법인이 갖고 있는 주택을 이것은 고유목적사업이다, 사전에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유동수 위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과세한다니까요. 그것을 왜……

○장혜영 위원 중부세 고지서 11월에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그런 문제는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공익법인에 대한 컨트롤, 관리 감독은 주무

관청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부동산, 주택을 취득하느니 마느니까지 종부세법에서 관할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도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고요.

○**장혜영 위원** 이렇게 되면 공익법인에 대한 법안을 따로 내서 심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동수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반대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잠깐만요.

취지에 관련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 이야기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주택만을 별도로 구분해서 기본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합산배제가 따로따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세율 체계나 중과세율 체계 내에서 누진세율에서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 대부분 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한다고 하면 공익법인 등이 일단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다른 주택하고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 오히려 합산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누진세율 체계 내에서 고세율이 아니라 낮은 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수 위원** 전문위원 의견에 반대하는 게, 왜냐하면 합산배제 주택 수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주택 수를 한 채로 볼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채 두 채 그것을 별도로 카운팅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택 수를 고유목적사업과 같이 카운팅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익법인을 넣으려면 괄호하고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 주택에 한한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소위원장 류성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 아니, 공익법인이 평계를 대고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런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부 의견을 들었고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괄호 열고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주택’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위원님 말씀이 저는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예를 두 가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필요한 예가 뭐냐 하면 서울 소재 교회가 있는데 지방 학생을 위해서 학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사관은 고유목적사업의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학사관을 주택으로 봐서 지금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찰에서 자기 보유 토지를 지역주민한테 주택용지로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는데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유목적사업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율의 종부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것은 과세해야지. 어떻게 해, 그런 것을.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은 사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은 법에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관련되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시행령 만들 때 오늘 논의했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장혜영 위원님 안이야, 내 의견이 아니고.

○**양경숙 위원** 만들어서 미리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을 넣어서 시행령에……

왜냐하면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시행령에서 상세하게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어떻습니까?

○**홍영표 위원** 저는 이 토론을 들으면서 기본 취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왜 정부가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판단해야 할 데이터를 못 만들겠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의심스러운 거야. 이것을 왜 못 만들습니까?

우리나라 공익법인 몇 개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

○**홍영표 위원** 몇 개입니까? 몇 개나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몇만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 몇만 개밖에 안 되잖아요. 국세청의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왜 못 해요? 저는 무슨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 토론을 듣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이 문제는 사실 그런 우려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다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든가 아니면 다음에는 몇만 개 되는 공익법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들을 납득을 시키세요. 이렇게 중요한 입법을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안 내놓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야. 그런 게 없다, 자료를 못 만든다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이것은 시행령에 명확히 하든가 정말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들이 없다,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확신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빨리 결론을 내리세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료를 얘기하는데 끝까지 안 내놓고 못 만든다 그러면서 이미 어느 학사, 무슨 사찰 다 알고 있네요. 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말하면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고 명확히 해서 다음에 하든가 그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행령을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해서 의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종부세 고지서는 11월에 나오고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가 특히나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정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익법인 가운데에서 국세청 개별 검증으로 적발돼서 추정받은 법인들이 학술·장학, 교육, 의료, 사회복지, 예술, 문화, 이런 분야들, 특히 종교 분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기조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목적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조세소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부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말씀도 하지 못하셨으면서 보유세를 내는 것이 마치 굉장히 징벌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좀 지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유세 기준은 아직 OECD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 사항들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행령에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장혜영 위원** 반대합니다. 한 번만 더 논의하게 해 주십시오. 시행령으로 넘어간다는 건 국회 손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아닙니다. 그 부분은 논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해 봐도 똑같은 의견들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안을 가져와서 의원실에 먼저 보고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어차피 전체적인 것은 의결하고 나중에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시행령을 기획재정위원회에……

○**장혜영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신동근 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너무 시행령에 위임해서 결국은 정부가 마음대로 하거나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냥 바꿀 수 있어서 저는 시행령에 넣지 않을 수 있으면, 본법에 명확히 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는 경우에는 그래도 최초에 만드는 시행령 문안 정도는 회람하고……

급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세제실장님, 아까 어떻게 이야기됐느냐 하면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괄호 넣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선미 위원 그게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잖아요. 넣으나 안 넣으나 제한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재산소비세정책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하는 겁니다, 인별합산. 그래서 법인은 법인의 주택을 다 합산해서 하는 건데요. 단지 아까 얘기했던 합산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합산배제를 하는데 나머지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합산해서 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결정하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여기서 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은 기본세율로 가고 나머지 주택은 종과세율이 포함된 것으로 가고, 이렇게 2개의 과세체계로 나뉘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합산과세라는 종부세의 기본원칙하고 배치가 돼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 문제도 생기고 원칙하고 안 맞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장혜영 위원 그러면 공익법인을 빼면 됩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그래서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학사관 같은 경우는……

○유동수 위원 아니, 그러면 공익법인을 빼고 하자고요. 원래 이것은 재건축사업자나 재개발사업자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건설해야 되는 임대주택이 팔리지 않을 때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논의됐는데 갑자기 공익법인이니 뭐니 끼워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공익법인을 빼라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러면 위원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여기서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해야지. 아니, 공익법인이 수백 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양경숙 위원 안을 만들어 온 것을 보고 의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세부적인……

○진선미 위원 정리를 하기 전에, 늘 반복적인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는 건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초자료가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익법인에 관한 사항이 정리되지 않을 것 같고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한다고 하면 오늘 논의된 위원님들의 발언 내용 중에 몇 가지 요청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자료들을 미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3쪽에 보면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에 ‘공익법인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는 경우에도 사실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장혜영 위원 위원장님, 하지만 부대의견을 법령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이미 말씀하셨는데 부대의견은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면 논의가 굉장히 세부적이고 또 다기화되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되 다음번 회의 때는 바로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자료 미리 제출하라는 것도 꼭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이 사항은 논의했던 내용만 다음에 정리가 되는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357)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830)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02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520)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9576)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758)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927)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34)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660)

(15시49분)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4항부터 제232항까지, 이상 9건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소위자료 12쪽입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율 상향하고자 하는 김한정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과 정부안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조특법 제10조에서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하여 대·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구분하여 시행을 하고 있고 제24조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당기분과 증가분을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R&D 세액공제는 그대로 두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있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해서 2023년에 한해 일반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당기분에 대해서 각각 2~6%p 상향하고 있고 추가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3%와 4%에서 10%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효과로 기재부는 2년간 4조 26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산정책처는 3조 81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한정 의원님 안은 R&D 비용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일정 부분 증액시키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정희용 의원님 안도 R&D 비용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있고 김주영 의원님 안은 R&D 비용에 대해서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재 조특법 10조에 따른 R&D 세액공제는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비의 20~40%를 공제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2009년 개정 시 도입되었으며 계속 일몰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몰은 24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서 보듯이 신성장·원천기술은 13개 분야에 대해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단계 구조를 개편해서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10%p 상향시킨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설해서 이것도 일몰을 24년 말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쪽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현재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3개 분야에서 지정되어 있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디스플레이 부분을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의 개별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해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시설과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해서 대기업은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우대하고 있습니다.

21년 세법 개정에서는 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다시 신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24년 말까지 일몰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세법 개정에서 중견기업의 일반시설과 신성장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을 8%로 상향한 바가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보시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 중소기업이 16%, 이게 당기분이 되겠고 직전 3년간 평균투자액 금액보다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4%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전략품목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1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의 무역적자 126.9억 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증가하다가 2023년 1월 D램 등 주요 제품 가격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

로 수출이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감소율은 44.5%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반도체의 경우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특히 시스템반도체도 2023년 1월에 29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도 2022년 10월 큰 감소 폭을 보인 이후에 4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로서 추가될 디스플레이 부문 역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이차전지는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 있어서는 OLED 사업전환으로 LCD 생산이 축소되는 반면에 OLED 제품도 생산단가가 하락하면서 2023년 1월 수출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차전지는 23년 1월에도 9.9%의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고 전기차용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향후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수출이 급감한 이유로는 2022년 1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만 공급과잉과 수요감소 및 재고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그리고 중국의 기술 추격 등 장단기 리스크가 겹쳐서 반도체산업의 위기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은 핵심기술의 확보 및 공급능력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및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통제할 경우 반도체가 다양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상실과 경제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므로 기술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반도체산업 지원책이 다양하게 고려됨과 동시에 신규 투자를 통한 공급망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24쪽 표에 보시면 주요국의 반도체 관련 주요 정책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2022년 8월에 ‘반도체와 과학법’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에 2000억 달러의 재정투입을 하고 시설·장비 투자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EU는 ‘유럽 반도체법’을 2022년에 발표하면서 주로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서 반도체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7개의 첨단기술 분야를 선정해서 R&D 및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2~5년간 면제하거나 저율 감세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 올해 1월에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투자비의 5%를 세액공제하고 R&D 비용에 대해 2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25쪽 표에 보시면 주요국의 반도체에 대한 R&D 및 투자 세액공제 비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R&D 비용에 대해서는 30~50%를 세액공제하고 있고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 최대 35%까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설비투자에 대해서 5% 세액공제하고 있고 R&D 비용에 대해서 25%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설비투자에서 25%, R&D 비용에서는 증가분에 대해서 20%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R&D 비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경우에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안에 대해서는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 데 이어서 2배에 달하는 공제율 상향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는 2년간 4조 2600억 원의 세수감이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3조 8122억 원의 세수감을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이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데 다른 기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임을 감안할 때 더 인상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해서 공제율 상향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35%까지 세액공제를 하더라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기준 최저한세 17% 적용대상 기업은—과표 10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10개가 되었고 12% 적용대상 기업은 63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에 한해서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한 금액의 2~6%p 상향하고 모든 통합투자의 증가분의 10%를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2023년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투자에 따른 경제성장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2022년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2021년 대비 3.7% 증가한 221조 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지만 23년에는 2022년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년 제조업은 전년 대비 8.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비제조업은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을 최소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982년 도입되었다가 본래 취지인 경기 조절 목적과 관계없이 거의 매년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던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상시적인 운영으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관심사항이고 또 관련된 사항인 임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상세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우선 정부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저희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합니다’라고 하는 자료를 참고드리면 바 있습니다.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본다면 전체 수출의 5분의 1, 국내투자의 4분의 1 그리고 부가가치 생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GDP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6%에서 8%로 일단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회에서 즉 자세히 설명드린 바대로 실제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급감이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역성장까지 예상이 되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 간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대만 일본, 이런 각국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중요산업에 대한 경쟁력 우위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세제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 들으신 대로 통합투자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 그리고 예전에 도입했다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일몰을 했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설비투자의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해서 추가공제율을 적용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년 투자의 역성장까지 예상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 되겠습니다.

동 건과 관련해서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 적용기간의 연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안은 아니지만 김한정 의원님, 정희용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R&D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아까 전문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대로 현재 30%에서 최대 50%까지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의 20~25% 정도의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50%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것을 60~70%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의 적용시한을 저희는 23년 말까지 1년 한시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30년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정도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제도적인 성격 그리고 주기적인 성과평가의 필요성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단기적으로 임팩트 있게 제도를 운영하고 실제로 그 제도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기간을 너무 오래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까지 적용기한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산자부의 이용필 첨단 산업정책관 나와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이용필 예.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산자부에서도 담당관이 배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홍영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영표 위원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특히 무역적자가 굉장히 대규모이고 또 거기다가 반도체 때문에 중국에서 작년 9월 대비해서 거의 절반 정도로 수출이 줄었지 않습니까? 무역적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첨단기술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시장의 문제를 하나 생각하면 과연 우리 정부는 칩4 동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도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거기에

참여해서, 지금 하기도 안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말하자면 칩4 동맹에 확연히 들어가면 우리는 중국 시장을 잃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의 4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는데 그 시장을 잃어 버릴 거고 또 거기 안 들어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첨단기술이나 디자인 이런 쪽에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칩4 동맹에 대해서 정부가 정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반도체에 대해 세제를 통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둘러싼 국가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세제 관련해서는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지난번에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하는 것을 정부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드디어 관철을 시켰지 않습니까? 1% 낮췄는데, 지금 그 이상의 것을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형태로 해서 또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업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R&D라든가 다른 다양한 설비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해 주면 저는 그것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 자리도 만들고 이러는 데 기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세금의 형태로 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전의 적자가 엄청나게 커요. 제가 알기로 한때는 전기의 원가가 예를 들어서 250원인데 한 94원인가 110원에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어요. 특히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산업체 중의 하나가 저는 반도체산업이라고 보고, 맞지 않습니까? 반도체산업이 1년에 몇천억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도 싸게 공급하고 투자세액공제, 온갖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 주면서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내야 국가가 유지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 추산으로 약 4조 2000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생기는데 이 대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칩4 동맹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뭔지 하나 말씀해 주시고 법인세와 투자세액공제, 이렇게 값싼 전기를 원가보다도 훨씬 싸게 반도체산업에 공급해서 이익을 보는 이런 문제까지 종합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첨단 산업국장도 배석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예, 누군지 말씀을 하시고…… 산자부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맞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이용필** 예,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장 이용필 국장입니다.

방금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칩4 동맹 관련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만 아직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실익을 고려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계속 미국 측하고 실무협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홍영표 위원** 결론은 아직 결정을 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첨단산업정책관 이용필**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관련해서 작년에 정기국회 때 저도 예산 쪽 관련해서 같이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조세하고 예산하고 같이 패키지로 협상이 있었고,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정부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는 것과 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부분을 6%에서 8%로 인상하는 패키지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종 협상 단계에서 3%p 인하가 관철이 안 됐고 서로 여야 합의하에 구간별로 1%p 인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법인세 인하율 폭만큼 줄어들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께서도 2월 7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차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한 과정이 전개되면서 국가전략기술 부분,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더 인상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나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

로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설비투자의 역성장의 리스크,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잉여가 늘어날 때, 이익 과실이 늘어날 때 그 부분을 환수하는 그 부분은 결국에는 기업의 영업이익 실적의 실적이 많이 나게 되면 법인세를 통해서 택스(tax) 부분으로 징수가 될 테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유용한 어떤 부분에 쓰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홍영표 위원** 법인세 깎아주잖아요, 또.

말해 봐요. 한전의 전기요금도 지금 부실의 원인이었는데 그렇게 또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답변해 보세요. 4조 2000억 세수 부족한 것은 어떻게 메울 생각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4조 2000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24년 한 해에 3조 3000의 세수감이 일어나지만 그 3조 3000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분의 2를 차지하는 2.3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24년 한 해에 적용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감세가 되고 25년부터는 다시 연간 1조 원 수준의 세수감 효과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세수감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정건전성, 지출뿐만 아니라 세수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4조 원 이상 되는 세수감 효과가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 다시 법인세의 회복으로 인한 어떤 선순환 구조,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염두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법인세율을 3% 깎자고 안을 들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1% 밖에 안 됐는데요. 그런 배경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투자를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국내기업들이 투자소요가 많은데

그 재원을 정부가 일부 도와주자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세수 측면에서 그게 우리 국가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최근 3년간의 우리나라 법인세 구조를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만에 법인세가 55조에서 100조가 넘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반도체 같으면 초격차를 유지를 하면 이게 잉여가 늘어나고 이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결국에는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법인세수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17년, 18년에 반도체 호황기에도 저희가 세수 오차가 1년에 한 20조 정도 초과세수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결국에는 과거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일정 부분 감면을 해 주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데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다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정부가 일부 투자를 하는 거지요. 정부 몫으로 투자하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24%니까 거기서 남는 이윤의 24%를 정부가 세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체회의 때 자료요구를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자료를 아직 충분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세소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을 아마 국내와 국외에 차등을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 중에서 한 15~16%가 외국에 투자, 특히 미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경우에 물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도움이 되나 국내 고용창출이라든지 전체적으로 GDP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등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 지금 기재부하고 예정처하고 금액이 다른데 제가 기재부 세수추계서를 봤더니 내용이 거의 없습니

다. 그냥 4조 26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정처에서도 이 자료를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정도의 개정 세수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지, 더 적을 건지를 한번 계산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실질적으로 투자 회사에게 어떤 정도의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회사들이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특히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해 보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나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회사 이름을 가리더라도 R&D 부분이나 투자세액공제라든지 투자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지 이 법의 실효성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설계를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 부분은 추가로 2%, 그다음에 신성장에 대해서 대기업 3%, 4%, 중소기업은 6%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전략기술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이 셋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전략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워낙 통합투자 때 세액공제 비중이 너무 커서 그런지 그닥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을 줄더라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공제도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3년 동안에 반도체 회사들이 투자액을 계속해서 늘려 왔기 때문에 올해 이 반도체 불황에서 3년간 투자액보다 더 늘려서 투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추가공제가 크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별로 혜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건, 투자는 적시성이 중요한데 투자시기의 조절도 기업의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크게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자부에서 나왔지만 신성장이나 원천기술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 왔는가, 이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세액공제적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 국가재정지원정책은 뭐가 있었는가,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 이 정도의 세액공제를 해 줄 정도가 됐으면 우리나라 R&D에 투자해서 적극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늘리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검토한 이후에 다시 이 법을 좀 더 논의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제가 메모를 쪽 했는데 유동수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 큰 카테고리를 말씀해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아까 기재위 전체회의 때도 제가 자료를 정리를 좀 해 달라고 했더니만 이 책자 조그만한 거하고 두 장짜리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미 검토보고서에 예를 들어서 최저한세율이 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세수효과, 아주 디테일하게라는데 뭐까지를 요구하시는지……

세제실장님, 관련되는 일곱 가지 다 적으셨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제가 잠깐……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는 최상대 차관님께서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었느냐, 이 R&D를 포함해서 국가 R&D 지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일곱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재부하고 예정처하고 세수효과가 왜 다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원래 자료를……

○유동수 위원 좀 디테일하게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산업은행 설비투

자계획조사라고 23년 치입니다. 투자전망치를 기초로 해서 추정을 했고요. 예정처는 21년 투자분에 대한 공제액, 그러니까 조세지출예산서상의 공제율을 가지고 활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고요.

○소위원장 류성걸 오늘 논의가 다 끝날 수도 있으니까 실무자가 KDB 자료 관련해서 바로 준비해서 배포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다음에 최저한세율 적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물론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은 상시 적용이 되고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세수효과가 매년 1조 정도 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임투 때문에 한두 해 정도는 최저한세율 이하로 잠깐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게 10년 동안 공제를 받기 때문에 최저한세율 제도까지 바꾸는 대규모 개편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임투세액공제 설계 문제인데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이해를 정확히 못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전략기술은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만들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임투를 국가전략기술에도 추가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유동수 위원님 의견이신 것 같아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런데 저희는 국가전략기술 15%하고 그다음에 증가분 10% 하면 25%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최대 35%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가전략기술은 임시가 아니고 상시로, 그 정도로 대규모 인상을 한다는 취지에서 임투 적용을 안 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불황인데 증가분 세액공제가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저희도 그것은 감안을 했지만 결국에는 과거 몇 년 동안 투자하지 않았던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를 조금 더 해라, 그러면 대규모 세액공제를 해 드릴 테니,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를 조금 더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증가분 세액공제를 가지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투자의 적시성 문제인데 지금 약간 투자하기에 적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면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공제율만큼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투자를 조금 당기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조특법 개정안 관련해서, 재정지원 관련해서 2장짜리 자료를 배포해 드렸는데 그것은 차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과 반도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기본적으로 R&D, 인력 양성, 인프라, 사업화, 이런 것 등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6500억 정도 수준 되던 것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1조 원 수준 이상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통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세제지원을 통한 반도체산업의 지원의 차이를 굳이 제가 이해하는 바로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떤 개별 기업의 반도체에 대한 R&D 투자를 유도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인프라와 관련된 겁니다.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R&D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기술개발 측면에서도 뭔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예산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지원의 성격과 세제지원의 성격은 좀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님이 아까부터 했는데, 제가 메모를 했는데 미안합니다. 김상훈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양경숙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훈 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루는 안건 중에 언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안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처한 상황,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물꼬라고 그럴까, 해법을 다루는 걸로 언론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127억 불의 무역적자를 봤는

데 이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반도체 수출이 무려 44.5%가 감소한 것 같아요. 우리의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기업 지원이 심상치 않은 상황 같아요. 대만의 TSMC가 일본에 대규모 공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4조 원을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인텔이 다시 반도체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세제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으로만 보면 우리는 R&D,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다는 안건을 지금 다루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법인세만 따지면 OECD 국가 중에 여전히 법인세가 높은 거고, 김진표 의장님께서 지금 중국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붙잡으려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한데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제 R&D를 하고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라도 상향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대체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냈으면 좋겠고.

다만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D 수출이 가장 급감하게 된 주 원인이 대중국 수출의 부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과는 별도의 해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산자부라든지 또 외교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의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반도체 기업,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R&D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필요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데에 좋은 성과를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감사합니다.

다음은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법인세를 3% 내리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안이었는데요. 국회에서 이게 1%로 조정

되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악착같이 반드시 3%는 재벌 대기업한테 혜택을 줘야겠다, 그러니 우선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 관련 기업들한테 세금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겠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회가 승복하고 반드시 해내라, 이런 요구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박입니까, 뭐니까?

그리고 기재부가 그렇게 절실하게 반도체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왜 한 달 전에 그런 생각을 못 했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반도체산업이 하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충분히 하고도 남지 않았습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반성하는 말씀 있었어요? 아까 기재부장관도 반성 안 했어요. 사과도 안 했어요. 고향사랑상품권만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료들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법인세가 작년, 제작년에 대폭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늘었지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돈을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 아니에요?

제가 2022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2021년까지 통계는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과표구간, 즉 3000억 이상 돈을 버는 기업이 103개였어요, 2021년에. 맞지요?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평균 20% 이상 수익이 늘어난 기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63개예요. 평균 61.2%의 기업들, 1년에 3000억 이상 버는 기업들 중에 최소한 60% 이상의 기업들이 최근 3년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더 많이 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돈 잘 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계를 내라고 했어요, 자료를 달라. 반도체와 관련한 업체들 중에 매출액 규모, 매출 우선순위 상위 10개 기업, 매출액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 내 주세요. 10개 기업이니깐 금방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상위, 우선순위 상위,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당기순이익 제출해 주세요.

당기순이익이 진짜 줄었는지 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게 하지 않잖아요. 이 거대한 관료집단 기재부가 왜 국회의 불신을 받습니까? 왜 불신을 받게 행정을 합니까?

그리고 자산변동 상황도 자료를 제출하세요. 우선 10개 기업만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자본금은 최근 3년 동안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부채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자산의 규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지금 투자를 더 하게 되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 3~4% 공제해 주던 것을 10%로 늘려 주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 상위 10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증가시켰는지, 몇 퍼센트씩 증가시켰는지,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공제해 주려면 앞으로 투자계획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더 적게 하려고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도 내세요.

2023년의 일부만 제출하고 있는데 자료도 안 내면서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법인세 3% 악착같이 내려주려고 했는데 국회가 반대해서 1%밖에 못 내려줬으니깐 도저히 안 되겠다. 최소한 4조 이상을 대기업들한테 깎아주고야 말겠다. 그러니 승복해, 국회’ 이것하고 뭐가 다른니까? 자료 내라고 하니까 ‘그런 자료는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야 합의해서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행태들입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양경숙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위원장님, 간단히 답변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먼저 차관님 답변부터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양경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 세제실 쪽에서 체크해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재부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지 정치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p 그 부분도 사실 정책적 측면에서 법인세율 3%p 인하가 필요하다는 당초 입장이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로 1%p 인하하는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것이지요.

다만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전반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반도체에 특

화된 국가전략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같이 전방위적인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라기보다는 반도체산업에 굉장히 특화된,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다시 고려해 볼 때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국가경쟁력 측면에서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절체절명의 어떤…… 굉장히 타깃 되어 있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번에 조특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류성걸 말씀하세요.

○양경숙 위원 작년 12월 24일에 기재부가 설명 보도자료를 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매우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0~50%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만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왜 이렇게 보고했어? 왜 이렇게 보도자료 냈어? 그리고 지금에 와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맞아?

○소위원장 류성걸 세제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위원님께서 처음에 재벌 대기업에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반도체산업 자체가 대규모 장치산업이다 보니까 장치산업을 이끌 수 있는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입니다. 그리고 1인 이상 사업체는 약 85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세제지원 혜택이 조그마한 중소·중견 기업한테도 혜택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과거에는 투자를 어떻게 했는지 하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 기업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특정한 기업이 언제 얼마를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 기업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접근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왜 그런 보도자료를 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때는 법인세까지 감안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만은 법인세율이 20%거든요. 미국은 2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전략기술 15%에다가 증가분 10% 하면 25%니까 세계 최고수준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건 맞는데 법인세율은 미국보다 아직도 3%가 높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불리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도 R&D 세액공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 30%인가 그런데, 그리고 투자세액공제도 5%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4%나 낮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느끼는 세부담 수준 혹은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에서의 부담, 이건 아직도…… 우리가 이 정도 해야지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 그래서 미국은 법인세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한테도 혜택이 약간 가지만 이 세액 혜택이 거의 80% 이상이 재벌한테 가요. 그것 더 잘 아실 거예요.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신동근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저도 신청했는데……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 홍영표 대표님 하시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하십시오.

○고용진 위원 어찌 됐든 차관님 그리고 실장님 계시지만 작년도 정기국회 논의 과정을 우리가 되돌아본다고 그러면 현재 정부가 제출한 이 세제개편안은 뭔가 철저히 준비되고 또 논리적으로 설득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고 실장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런 거잖아요. 정부가 법인세를 3% 정도 낮추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1%로 간 마당에는 지난번 논의해서 결정된 세액공제율 8%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본다면 여러 가지 투자 유인이 약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전에 방기선 차관이 조세소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차곡차곡 그런 얘기들이 논리적으로 쌓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게 중간에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기재부의 입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미루어 짐작은 하겠는데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충분히 설명되지도 않았고 또 그것이 납득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제가 길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안을 들고 왔으니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국가전략기술이 대기업은 원래 8% 세액공제율을 했는데 15로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은 15로 가고 중소기업 25로 가고.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여러 가지 수치가 쓰여 있는데 이것이 왜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우리가 20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21년에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는 등 이런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투자효과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대로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들고 온 이 숫자의 의미가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지, 혹시 제가 못 들었는데 설명을 다 주셨나요, 왜 이 숫자가 돼야 되는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일단은 당기분하고 증가분을 합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이 지금 25%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일단 맞추겠다 하는 취지에서 15%, 10%이고요.

○고용진 위원 오로지 그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그리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죽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업, 중견기업 보시면 그전에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의 약 배 정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은 원래부터 공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배까지는 안 가더라도 중견기업은 작년에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일반이 3%였는데 7%가 됐고—임투를 말씀드리는데 겁니다—신성장도 5%에서 10% 그다음에 국가전략기술은 8%에서 15%, 약 배 정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니까 왜 배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것은……

○고용진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가전략기술도 미국이 한 25%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까마는 미국은 또 그 외에 많은 제한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고용진 위원 비우호국에 대한 투자제한이라든지 각종 제한을 두면서 하는 거잖아요.

불과 12월에 기재부가 주장했던, 외국에 비해서 우리의 투자세액공제가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것에서…… 그 주장은 2년 전이 아니라 두 달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바뀐 것 없잖아요, 외국의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올라갔다는지. 오늘 전문위원 검토자료 보니까 대만이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기재부가 국가전략기술 대기업 8% 하다가 25로 가야 된다는 논리만 단지 미국에 맞춘다, 이게 설득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저도 안 되고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구체적인 투자효과, 과거의 세제지원 효과에 대한 아무런 분석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 숫자들 막 써 놓은 것 보면, 기재부가 조금 더 치밀하게 연구 검토해서 자료도 내고 우리한테 줘야 우리가 심사를 하지 이렇게 숫자 막 던져 놓으면…… 8%면 충분하다고 한 지가 불과 두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빨리 해 달라고, 물론 취지는 알아요. 임투도 1년에 한해서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고 국가전략기술도 지금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투자를 줄이지 말고 더 시키라는 것이지만 이 숫자를 들고 온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너무 약하다, 자료를 좀 줘야 되지 않느냐, ‘미국이 25이니까 거기 따라잡시다’ 이걸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구체적인 숫자의 근거랄까 이런 것을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신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근 위원 저는 평소에도 법인세 인하보다는 차라리 투자세액공제가 낫겠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지난번 세법 개정 시에도 그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국감 전에 반도체 관련 회사

의 간부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들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기재부는 법인세 3% 인하를 주장한 바가 있고 또 여기 산자부 관계자도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까 산자부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산자부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공장 증설하고 이런 데 1조 원 예산 했는데 그것 다 기재부가 삭감했어요, 작년에. 그때 한마디도 못 하고.

그리고 저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소위에서도 그렇고 장혜영 위원님이 비판하는 소소위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반도체만 할 게 아니고 백신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미래성장산업, 여러 가지 전략산업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한 10% 정도 합시다’ 그랬더니 ‘반도체 하고 8%면 됩니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강변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 원안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대통령 법률 제정 공포하면서 엉뚱하게 야당 탓하면서, 국회 탓하고 그러면서 추가개정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안을 내고.

저는 기재부가 이렇게 돌변하는 태도도 참 경이롭고 또 거기에 따라서 논리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참 대단한 집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 그 당시에 대통령께 이것 보고한 바 있습니까?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어요? 대통령이 그 당시에 언론을 통해서도 법인세하고 금투세 얘기는 했지요. 그렇지요? 그것 보고한 바 있습니까? 보고 안 했어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보고사항은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차관 쪽이기 때문에 1차관 라인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부총리께서도 여러 번 국회에서도 답변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에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동근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지금 여기서 따져묻기보다는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다시 말해서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부수법안 관련, 예산 관련해서 하면서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새로운 법안을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법인세 1%로 되다 보니

까 이번 기회에 2%만큼 투자세액공제를 가지고 또 세제 삭감해 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반도체나 전략투자 부분에 대한 것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임시 투자세액공제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잖아요. 이게 한 2조 4000억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2개 합치면 3조 6000억인데 이렇게 세수감소가, 그것도 적은 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세수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을 예산안과 연계해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산안 처리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렇게 하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던데 세수감소 대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니까 나중에 세수가 더 건히더라’ 이런 하나 마나 한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저는 이걸 기재부가 잘하는 장기 있잖아요. 잘 통과 안 되면 그냥 부수법안 딱 상정해 가지고 연말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년엔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제 투자 증가와 효과성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법인세 인하 때도 매번 서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물론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 실적이 부진하고 경제도 굉장히 안 좋고 특히나 소비부문과 수출부문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나마 투자부문이라도 증대시켜야 경제 활력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고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을 가져올 때는……

차관님, 꼭 오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아까 두세 시간 전에 전체 회의에 상정했어요. 그래 놓고 자그마치 4조 가까운 감세안을 오늘 바로 통과시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의 공감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저희 위원들도 충분히 설득시켜야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또 얼마나 하는 게 적절한지도 봐야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산업을 아까 세 가지

들었지요?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백신인가요?
더 추가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배터리, 백신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배터리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추가되는……

○신동근 위원 디스플레이도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 전환에 따른 미래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국가기술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우리도 미국처럼 IRA법 비슷한 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하게 되면 대부분 투자세액공제 이런 게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원법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는 게 포괄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지요? 기재부가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답변을 하세요. 맞지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예, 맞습니다.

○신동근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서 적어도 원칙상 산업군 정도라도, 명칭 정도라도 법에 상향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단다, 물론 그게 때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런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요.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는 우리 사회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걸 여야를 따지지 않고 어느 정부 따지지 않고 항상 해 왔던 사안들이고 한테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동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내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신중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께서 아주 긍정적인 말씀도 하셨고 한테 조금 더 검토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시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위원장님, 간략히 말씀하신……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말씀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세수감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그게 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24년도에 세수가 감되는 규모가 3.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국세수입이 400조라고 할 때 한 1%, 물론 작다고 말씀드리는데는 아니고요 국세 수입 전체 규모에 비하면 한 1% 미만 수준이고, 그 부분도 24년도 한 해에 3.3조의 세수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5년부터는 2.3조, 한시적인 건 빠지면서 -1조 수준의 감이 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내년도 예산편성 프로세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합의를 하셔서 처리해 주신다면 3.3조 원 수준의 세수감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내년도 세수전망을 하면서, 지출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신동근 위원 한마디만 더……

○소위원장 류성걸 예,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이게 전략투자세액공제 부분만 새로 가져왔어도 말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끼워 넣기로 가져왔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이 2개를 동시에 해야 돼요? 아니면 분리해서 할 수 없어요?

세제실장님, 할 얘기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차관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안과 연계시키는 문제는 작년도 저희가 세제개편안 갖고 와서, 올해 세수감 효과가 약 6조 정도 됐는데 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세수전망을 6조를 줄였습니다. 그렇듯이 올해 이 법안이 통과하면 이게 내년에 공제를 받을 텐데 내년 세입예산안을 조금 줄이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1%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면 약 20조 원의 경상소득이 증가합니다. 세수로 따지면 조세부담률을 한 20%로 잡으면 4조 원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만 하는데, 저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을 안 하고 성장을 아예 안 하면 세수가 증가를 안 하지만, 약간의 세수감 효과는 있지만 성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만 하는 거고요.

국가전략기술은 그 국가전략기술을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어떻게 보면 매년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너무 투자세액이 크고 하니 국가가 조금

도와주자는 측면에서 도입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업들이 잘되면 오히려 세수가 엄청 더 많이 들어오겠지요. 일단은 그렇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위원님, 한 포인트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과 세제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시에 하는 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반도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동근 위원** 시간 얘기를 했는데, 삼성은 투자 축소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SK 같은 경우에는 투자 축소하겠단 이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세액공제가 안 돼도 축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장상황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주면…… 구체적으로 반도체 회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수렴한 게 있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혹시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거나 임투가 됐을 때 투자를 더 늘리겠다, 이런 업계의 의견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밝히기도 그렇고 또 더 추가적인 사항이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홍영표 대표님 하시고 배준영 위원님, 그다음에는 장혜영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도 위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의 문제보다도, 여기 자료 보면 오히려 기재부에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너무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 협조가 절실합니다’, 국회가 협조를 안 했습니까? 당연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국회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재부에서 마음이 급해 가지고 된 국회 협조가 절실, 국회가 협조가 안 돼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심사할 때 여당에서는 20% 하고 야당에서 10% 하고 8%로 결정이 됐는데 며칠 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 해결방안을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정책 시기, 특단의 대책, 이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될 내용들이 지금 갑자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보면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산업기반·미래성장·안보를 좌우하고 반도체는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고 미래 유망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고 국가 대항전이고 초격차 기술 확보, 시장 점유율 확대, 공격적 투자를 다른 나라, 미국 경쟁사들은 추진하고…… 이 내용을 어떤 위원이 모릅니까?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세미나 많이 하고 토론하고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기재부가 변해서 시기 이야기하고 특단 이야기하고 긴급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사실 대통령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우리가 공감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제기됐던 여러 문제들, 세액공제 문제하고 세수효과 이런 것도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세액공제는 외국은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기재부하고 예정처의 전망치하고 공제율의 차이는 이런 것들로 해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걸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기업 비밀 누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자료를 내야, 이 내용을 풍부화해서 이걸 들이밀어야지, 국회 협조가 절실하고…… 내용을 뻔히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접근은 하지 마시고, 내가 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풍부화해서 내용과 시대적 상황이 맞으면……

지금 EU, 미, 일, 경쟁 치열하다는 것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오늘 어차피 결론이 안 나니까 다음 회의 때는 이런 내용으로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고, 뭐 ‘협조가 절실합니다’, ‘입법이 지체되어 반도체 핵심기술 및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이런 건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한병도 위원님, 오늘 의결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정부에서 자료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만……

어쨌든 다음은 홍영표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영표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이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저는 정부가 오늘 가져온 안들이 우리 국회에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까 제가 칩4 동맹에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를 물어봤는데…… 그런 말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각국이 반도체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하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지원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칩4 동맹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반도체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반도체의 네트워크가 동전의 한 면이라면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이런 걸 넘어서서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대만 한국, 이 사이에도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세금을 깎아주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을 챙길 수 있는, 특히 통상무역 분야에서 어떤 외교적인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만나 본 기업의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에다 투자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고.

지금 기업들의 고민은 우리가 칩4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못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중국 통상외교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세액공제를 올해 해서 저는 얼마나 투자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 공급이 지금 엄청난 과잉 상태입니다. 실제로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걱정이, 이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과잉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메모리 같은 데는 삼성이 감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기네들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해서 참 운 좋게 지금 반도체 산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국제관계, 특히 우리 국익을 지킬 수 있는 통상의 전략과 외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나 국제관계를 보면 전혀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하고만 함께 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특히 이 통상 분야는 중국과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갈 건지, 미국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시킬 건지, 이게 정부가 해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차관님, 얘기해 보세요.

○소위원장 류성걸 차관님,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아니요, 특별히 더 할 말은 없고 홍영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우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 잘 유념해서 정책을 고민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다음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은 장혜영 위원입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오늘 민주당 위원님들 좀 더 많이 계셨으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었는데,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게 과연 대책은 있느냐,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 총론적으로는 공감대가 있는데 항상 각론에서 막혀 갖고 진전이 안 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각론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

에서 전체적인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참고로 어제 제가 들었다는 임형규 ‘왜 한국에겐 반도체산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내용으로, 이분이 1976년도에 삼성반도체에 입사해서 2008년에 퇴사하기까지 오로지 반도체만 하신 분인데 ‘왜 한국에겐 반도체산업인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와 정보혁명입니다.

48년도에 트랜지스터로 시작을 했지만 60, 70, 80 이렇게 거치면서 AI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사실 반도체 및 정보혁명은 계속 진화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디지털 기술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형인데, 아까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이 전자 분야에 노키아, 소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유럽에는 노키아가 통신칩, 메모리에는 일본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중국 대만이 있는데, 저 맨 밑줄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톱 10에 1990년에는 미국이 3, 유럽이 3, 일본이 3, 한국이 하나였는데 2020년도에는 미국 7, 한국 2, 대만 1, 그래서 유럽과 일본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냐고요? 투자를 안 하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반도체산업이라든지 이런 신성장동력이 꺼졌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본이 2022년도에 7조 원을 조성해서 반도체 생산기반 마련을 한다고 하고요 23년도에는 12조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걸 따라잡으려고 19조 원이나 더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차관님, 이번에 우리가 법을 바꿔서 세수 감소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24년 한 해로는 3.3조 정도 되고요. 25년부터는 -1조 수준의 세수 감이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3조 정도의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데 일본은 이렇게 따라잡기 위해서 1년에 19조 원을 더 쓰는 겁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아까 말씀대로 1990년도에는 이렇게 우위에 있는 기업이 3개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

럽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럽 반도체법 430억 유로 해서 58조 원을 더 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독일 인텔 이런 데서 68억 유로를 지원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반도체나 이런 신성장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려 67조 원을 초과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3조라고 그랬지요? 우리나라 지금 3조 때문에 나중에 10조 투자할 겁니까? 20조, 50조 투자할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우리나라가 사실 신성장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십시오. 글로벌 기업 지형에서 기업가치를 따진 겁니다.

첫 번째, 의학과 정밀화학이 있는데 미국—과란 그래프입니다—존슨앤드존슨 같은 데는 4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는 제일 큰 데가 삼성바이오인데 470억 달러 정도지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슷하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 현저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5960억 달러인데 현대·기아는 55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전자·반도체·배터리 보시면 대만의 TSMC 기업가치가 501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가 3460억 달러인데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엇나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재벌 집 막내아들’ 보셨지요?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라고 해서 그렇게 밀고 나갔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산업의 미래가 있고 지금이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가 반도체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갑론을박하고 그거 다 조절하고 지원 안 하려고 했으면 지금 그게 있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반도체산업 분야별 기업 지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메모리가 있고 로직이 있고 파운드리가 있고, 8개 분야가 있습니다. 메모리 분야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모리는 만주 정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임 박사님이. 그리고 파운드리라든지 제조 관련된 게 중원이라서 우리가 메모리만 계속 하고 1위 하지만 이런 로직이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소재·장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반도체산업 분야……

○소위원장 류성걸 배준영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제조기반도 보시면 미국은 로직이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웨이퍼 가공, 제조가 다 골고루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제조에는 19%, 조립에는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 파운더리는 세계 2위, 그런데 팹리스(fabless)라고 반도체 설계라든지 장비 국산화율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론은 다 그렇게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처럼 수십조 원을 투자해도 결국은 못 쫓아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9페이지에 2023년 설비투자계획 전망 보시면, 아까 계속 대기업만 말씀하시고 그러시던데 사실 설비투자계획 전망의 맨 오른쪽을 보시면 2023년 전망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은 보십시오. 2023년에 중소기업은 32%를 덜 한다고 그러고 제조업은 37.9%를 덜 한다고 그러고 비제조업도 25.6%를 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게 대기업의 얘기가 아니고 중소기업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얘기만 하시는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우리 의결해야 될 그런 안건도 또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요약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오늘 제가 조세소위에 임하면서 청년의원으로서 참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개탄스러운 기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선배 세대의 공무원들에게는 참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너

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과 가치를 두고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생각과 가치에 입각한 치밀한 논리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설령 저의 의견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일컬어지는 기재부의 공무원들 앞에서 밀리더라도 감탄하면서 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재부의 논리 실종 그리고 책임 실종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슬픈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다만 대통령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고 있는 거다’, 이 단순한 진실을 이렇게 긴 미사여구로 가려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먼저 자료의 문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12월 1일 날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그때 제가 기재부에 요청드렸어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는 34개 기술로 세액공제 받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 얼마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류성걸 위원장께서 그때도 위원장이셨는데 자료 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 오지 않았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조세지원 도입하고 나서 실적 집계한 자료 그것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투자로 어떻게 연결됐는지 현황 요청했습니다. 소위원장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안은 바뀌었고 똑같은 논의를 두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께 여쭙볼게요. 지난 12월 여당안에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여당안에요?

○장혜영 위원 예.

25% 올려야 된다, 이런 여당안에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를 기억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

○장혜영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장혜영 위원 ‘2024년 법인 세수가 2조 7000억 감소한다. 세수감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감소하는 법인 세수 2024년에만 3조 2000억 아납니까?

물론 아까 법인 세수를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감면해 주지 못해서라고 하는 논리를 말씀하시는 하셨습니다 저는 세수라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p 인하하면 세수감이 3.3이니까 3조 2000억으로 막았으면 절약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를 국민들한테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기재부에서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 때는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세제실장님께도 말씀드릴게요.

기재부에서 아까 ‘미국에서도 25% 하니까 우리도 25%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주장에 대해서 지난 세제개편안 때 기재부에서 뭐라고 반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혜영 위원 뭐라고 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작년에는 세제개편안을 법인세율 인하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인상하는 것을 폴리시 믹스(policy mix)로 세트로 갖고 왔는데 그때는 법인세율 인하 세수감까지 고려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저희……

○장혜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25%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에 중국과의 교역 금지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법안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때 추경호 부총리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만 여전히 아무런 사과 없이 이런 법안들이 정부안으로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드렸는데 부총리께서는 끝까지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점을 아까 양경숙 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기재부를 대표해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아까 차관님께서 ‘정치는 신경 안 쓰고 정책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을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정치가 아니라면 정책적으로 무슨 정합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도대

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야말로 사실 행정부도 그리고 입법부도 국민을 두려워하지는 않고 오로지 재벌·대기업만 두려워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오늘 가장 실망스러운 건 정치의 언어들에 오염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했던 말을 오늘 뒤집어도 당당할 때 세제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 그 자체가 오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법치가 중요한 정부니까 말을 뒤집는 건 위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을 텐데요. 언어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방기하시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염시키고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건 세수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기재부의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정합성을 가지고 정책의 전문가로서 책임 있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때 8%였으면 지금도 8%인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장혜영 위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미 위원 저도 짧게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진선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의결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간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몇몇 위원님들의 발언에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워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 무시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한 비율로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수준을 정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차관님 또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이 24일 보도 자료 한번 오시기 전에 읽어 보셨나요, 12월 24일에 기재부에서 낸 보도자료? 차관님, 읽어 보셨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저도 같이 봤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쭙볼게요. 2022년 12월 24일 보도자료 낸 이후에 기존의 반도체 관련한 그 공제율을 높이고자 주장을 하시는 법안을 만드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었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제출해 주셔야 할 거고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게 입법부가 발목을 잡는다? 애초에 기존에 정부안에서 만든 그 율을 다 받아들여 준 거고요. 그때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계속 기재부에서 예산을 얘기할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롭거나 삶이 위태로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몇백 원, 몇천 원, 합치면 몇억 원, 몇십억 원이 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제한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마치 이것을 통하지 않으면 나라가 온통 망할 것처럼 이렇게 위원들마저 마구 보태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코로나19 3년 동안 자산 격차가 어마어마 해졌고 지금 이 공제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은, 3년 내내 누구는 돈 한 톨 못 벌고 3년 동안을 견뎌야 했는데 그분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현금 보유금, 여전히 우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데 그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세금이 많아서인가요?

우리가 법인세율 할 때도 그렇게 논의했잖아요. 저는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여기에 내고 있는 법인세율에 대해 원래 하고자 했던 목표가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공제를 이미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실제적인 체크를 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간사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관련되는 것을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준비를 해 주시고……

○**진선미 위원** 자료제출 요구 30초만 하겠습니까.

○**소위원장 류성걸** 예, 말씀하십시오.

○**진선미 위원** 그래서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한세 관련해서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는지, 그래서 논의를 했다면 그 논의된 과정들이나 이것들도 빠르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최저한세율 10%, 12%, 17% 관련되는 사항하고 아까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투자세액공제는 현재 최저한세에 걸리는데 이렇게 됐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저희가 최저한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관련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보다 이렇게 바뀌었던 이유와 또 이렇게 숫자를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간사님과 다시 협의를 해서 내일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그리고 다른 사항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를 한시 사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경호** 35쪽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시 사항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80%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올해 6월 말까지 다시 80%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이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금년 상반기까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저희가 정부안을 준비하면서 고유가·고물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취지입니다. 원안대로 논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신동근 위원 저는 이걸 찢끔찢끔 상반기 하고 또 상반기가 되면 하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딱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80을 90으로 못 하나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것은 세제실장의 얘기를 좀 들어 보고요.

기간은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추가적인 연장 필요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소위원장 류성걸 먼저 답변부터 해 주세요, 세제실장.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80%는 저희가 지금 도입한 공제율 중에서 가장 높은 공제율입니다. 그래서 80%로……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년에 80%로……

양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경숙 위원 지금 기재부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3조 6000억이다, 4조다, 이런 세금을 깎아주면서 유일하게 서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세수를 좀 덜 내게 해주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굴어요? 전체 세수감소분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요.

4조 할 때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변을 하더니 80%에서 100%로 올리면 어떻고 120%로 올리면 어때요? 그래도 2000억도 안 되고 1500억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올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진짜 서민들도 위하는 그런 세제혜택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위원님, 그 사안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양경숙 위원 다르긴 뭐가 달라요, 본질적으로? 대기업한테는 그렇게 대규모로……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경우에만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 필요할 경우에 2배 연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혜택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으로 6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6개월로 가져왔지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니까 안정적으로 금년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부분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 그러면 반도체 법안도 6개월만 할까요?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다들 동의하시는 법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도에 따라서 저는 소신 반대를 표명을 하고 싶습니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소득공제의 효과가 구조적으로 중·고소득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짚고 싶은 거고요. 기재부가 제시한 소득구간별 소득공제 자료는 구간을 교묘하게 잘라서 마치 구간별로 균등한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 자료를 보면 하위구간일수록 공제금액의 비율이 낮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감면액 차이는 엄청난 격차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중요한 것은 공제금액이 아니라 공제세액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미묘하게 섞음으로써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조세소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을 때 ‘알뜰교통카드가 있으니까 세액공제 빈틈을 메울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기재부에서 했었는데요. 알뜰교통카드는 사용자가 30만 명 수준밖에 되지 않아서 전체 대중교통 사용자의 1%에 불과하고요 카드 발급에 주민등록까지 필요해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소득공제 조합은 지원 사각지대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기후위기를…… 오늘 특위가 국회에서도 출범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지원이 아니라 아예

파격적인 제도적인 유인이라는 규제를 같이 내놔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대중교통을 지원하면서도 기후위기에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독일의 9유로 티켓 같은 대중교통 가격인하 그리고 유류세 인하폭 원상 복구, 탄소세 도입, 이런 종류의 담대한 정책 조합이 필요한데 이런 종류의 대안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생 특위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논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왜 결론은 이렇게 예전부터 해 왔던 일을 반복하는 쪽으로 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기재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통과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기정사실처럼 서술해서 연말정산 할 때 혼란을 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류성걸**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를 관련해서 장혜영 위원님은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소득공제가 사실상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년간으로 연장을 하고 80%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잠정 의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은 오늘 오전 회의 때 기재부장관께서도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했던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 조정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40페이지입니다.

작년 조특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 유예하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도 같이 2025년으로 유예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원래 시행일인 2023년 1월부터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적용례에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기부한 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종전 부칙의 개정안에 시행

일을 3월 1일로 명기하는 것으로서 이게 올해 3월 1일 이전에 공포, 시행이 되어야 되고 그게 늦춰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오전에 부총리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과정 속에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오늘 처리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차질 없이 준비돼서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이걸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다만 오늘 법률 개정사항은 아닌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조 가까이, 8조 엔인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그게 보면 민간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부하거나 모금 허용하거나 또 홍보하고 이런 게 가능한데, 그것과 유사하게 양구군 같은 경우에 ‘못난이 프로젝트’라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제재를 해서 못 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행안부에서 무슨 독점 플랫폼을 만들면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행안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의견 개진하면서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장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혜영 위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다만 기재부가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면서 빚어진 약간 낮부끄러운 해프닝 같은 것 이기는 하지요. 금투세를 유예해 달라고 하시면 관련된 법령들도 연계돼 있는 걸 꼼꼼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검토할 책임이 기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기재부만 문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들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자기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차관님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에 대한 말씀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최상대 차관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2차관 최상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부분을 의결을 해 주시면 이런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실무자들과 간부들이 더욱더 신경을 쓰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소위원장으로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관련되는 조항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법안을 개정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한 개 한 개씩 전부 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조항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 국회 전문위원실에서도 관련되는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일 조정 관련된 사항도 잠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되어서 여러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적으로 시행령에 또는 부대의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세제실장님, 이 관련된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아니면 괄호 해서 한정적으로, 아니면 시행령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주택만 보유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오늘 개정안대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기타 주택도 보유한 경우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법률……

○소위원장 류성걸 법에 명기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고광호 예, 법조문을 넣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까 논의하다가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했던 부분들은 법조문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은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괄호 넣고 하는 거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2항과 제223항, 이상 2건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특법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여러 건을 같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시행일자 조정과 또 교통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사항은 잠정 의결했습니다만 이 전체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논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사님과 의사일정을 다시 조율해서 빠르면 내일이라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류성걸 신동근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근 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어떤 부분에서는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다 성격이 다른 건데 조특법이라고 해서 이걸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하면, 하나가 안 되면 다른 걸 의결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된 것은 된 것대로 의결하고 안 된 부분은 분리하고 그다음에 안 된 부분은 조금 더 숙성시켜서 할 부분은 하고, 그게 저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류성걸 간사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여러 좋은 말씀 그리고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정확한 확인과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출석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 용 진	김 상 훈	류 성 결	배 준 영
신 동 근	양 경 숙	유 동 수	장 혜 영
조 해 진	진 선 미	한 병 도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 경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2 차 관	최 상 대
세 제 실 장	고 광 효
조세총괄정책관	정 정 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 용 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 만 희
관 세 정 책 관	김 재 신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이 용 필
첨 단 산 업 정 책 관	